

[] 체결
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[] 변경 실적보고서
[] 이행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1. 보고인 현황

기관(업체)명		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	
대표자 성명		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	
소재지		전화번호	

2. 대행사업 현황

대행사업명			
사업 소재지			
사업규모		사업기간	
계획 및 사업의 종류		계획 및 사업의 코드	
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			
대행사업의 개요			

3. 계약 현황

발주자(기관)		전화번호	
계약자	주 계약자:	지분금액(백만원) 및 지분율(%)	
	(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:)		
	공동계약자:	지분금액(백만원) 및 지분율(%)	
	(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:)		
	재대행자(환경영향평가업):	재대행금액	백만원
	(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:)	재대행계약기간	
	재대행자(측정대행업):	재대행금액	백만원
	(측정대행업 등록번호:)	재대행계약기간	
(변경)계약일자		(변경)계약기간	
(변경)계약금액	백만원	낙찰률	%
협의내용 통보일자		준공일자	

4. 참여 기술자 현황

대행계약(변경계약) 체결 시									
연번	소속회사	성명	생년월일	기술등급	평가 분야	전문 분야	담당 업무	수행 형태	참여 기간

대행계약 이행 시									
연번	소속회사	성명	생년월일	기술등급	평가 분야	전문 분야	담당 업무	수행 형태	참여 기간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
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대행계약의 체결(변경) 실적 보고: 계약서(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) 사본 1부 2.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: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(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 니다) 및 세급계산서 사본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------	---

작성방법	
1.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,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,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 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합니다. 또한,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(계약일자, 계약기간, 계약금액, 참여 기술자)에는 변경보고 대 상에 해당합니다.	
2.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. - 대행사업명: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- 사업 소재지: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- 사업규모: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- 사업기간: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- 계획 및 사업의 종류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, 별표 3,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·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,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- 계획 및 사업의 코드: 계획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 (예시) 별표 2. 1. 정책계획 중 바. 산지의 개발 1) 「사방사업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"별표 2-1-바 -1)"로 기재 -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: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, 사후환경영향조사, 환경보전방안(환경영 향평가등의 변경협의), 기타 등으로 기재	
3.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. - 계약자: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,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하며, 재대행자는 환경 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을 준 경우에만 작성 -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(계약)금액의 비율을 기재	
4.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,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 - 소속회사: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- 기술등급: 기술자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기재,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술자격 또는 주 경력을 기 재 - 평가 분야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(자연생태환경 분야, 대기환경 분야, 수환 경 분야, 토지환경 분야, 생활환경 분야, 사회환경·경제환경 분야)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- 전문 분야: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자연환경, 토양환경, 해양,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- 참여 기간: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- 담당 업무: 총괄 책임자, 분야별 책임자, 분야별 평가자, 평가서 검토·협의,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(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 접 기재) - 수행 형태: 단독계약, 공동계약,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(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)	
5.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	